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97
------	-----

2009. 06. 26.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15일
- 다.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09년 6월 26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청소·경비 등 단순관리기능의 외주화로 인한 정원 194명과 기능
쇠퇴 분야 정원 84명을 포함한 278명을 감축하는 한편, 보건환경
연구원의 석면조사·연구 인력 보강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한
11명의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총 267명을 감축하고, 정원 조정
및 감축에 따른 기능직 직급비율을 반영하기 위해 기능직 정원책
정 기준비율을 변경하려는 것임

나.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2) 입법예고(2009. 5. 8 ~ 5. 27.)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령)

본 안건은 시설관리, 청소·경비 등 단순관리기능의 외주화로 인한 정원 194명과 기능쇠퇴 분야의 정원 84명을 포함한 278명을 감축하는 한편, 증원은 임시기구에서 정규기구화(뉴미디어담당관 1명, 자전거교통추진반 1명, 한옥문화과 1명)에 따른 일반직 4급 3명과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인력 8명 등 11명 증원하고, 정원 276명 감축에 따른 기능직 직급비율의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이로 인해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16,150명에서 15,883명이 됨.

가. 임시기구의 정규기구화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안 제2조)

- 정규기구화 대상 임시기구는 뉴미디어담당관, 자전거교통추진반, 한옥문화과 3개 부서로, 현 부서별 인력 수준에서 과장·담당관 정원만 (행정·기술 4급, 3명) 증원하려는 것임.

[표1] 임시기구의 정규기구화에 따른 인력 증원내역

부 서		인원	임시기구설 치일	조정 내역
임시기구의 정규기구화	홍 보 기 획 관	1명	2008.8	• '뉴미디어담당관' 정규기구화에 따른 정원조정 - 행정·기술4급+1
	도 시 교 통 본 부	1명	2008.9	• '자전거교통추진반' 정규기구화에 따른 정원조정 - 행정·기술4급+1
	주 택 국	1명	2002.2	• '한옥문화과' 정규기구화에 따른 정원조정 - 행정·기술4급+1

- 현행 임시기구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뉴미디어담당관은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통한 시민여론 청취 및 시정반영, 시정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전거교통추진반은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리고, 한옥문화과는 우리 고유의 주거양식인 한옥을 서울의 미래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음.
- 업무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부서에 대해 일부 정규기구화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거 민선 3기말 대비 【표2 참조】 일반직 4급 정원이 23명(13.5%) 이나 증가되었으며, 정규기구화로 인한 4급 직급의 신설은 민선 4기의 “작고효율적인 조직 구축” 시책과도 상반된다고 할수 있으므로, 정규기구화로 인한 4급기구 수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 2] 민선3기말 및 민선4기 정원 비교

년 도		민선 3기말 (’06.6월)	민선 4기 (’09.6월)	민선 3기말 대비 증감
총 계		16,339	16,155	△184
일 반 직	소계	6,476	6,528	+52
	3급이상	47	50	+3
	4급	170	193	+23
	5급	834	964	+130
	6급	2,096	2,282	+186
	7급	2,239	2,190	△49
	8급	832	694	△138
	9급	258	155	△103

- 다만, 자전거교통추진반의 경우, 우리나라의 자전거 수송 분담율이 1% 대로 분담률이 27%에 이르는 네덜란드나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육성시킬 필요성이 있고, 녹색산업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은 중요한 시대적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규기구화 하는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음.

나.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인력보강 사항(안 제2조)

- 대기오염 및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석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담 팀을 신설하고, 또한 쇠고기 유전자 판별 등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 및 전염병 진단을 위한 연구인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직 8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표2]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인력 증원 내역

부 서	인원	조정 내역
보 건 환 경 연 구 원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조사팀 신설 등에 따른 연구인력 증원에 따른 정원조정 - 연구관 +1, 연구사 +7 (환경연구관+1, 환경연구사 +3, 보건연구사 +2, 수의연구사 +2)

- 이 중,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부에 석면조사분석팀을 설치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09.8월 시행)에 따라 일정규모 건축물 철거시 석면 사전조사가 의무화되어 석면 관련 연구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분석을 위한 팀 신설 및 인력 증원 4명을 증원하는 것은, 석면 등이 발생하는 철거건축물이 매년 약 1

만 5천건이 발생하고 있고, 법적 의무사항을 수행해야 하는점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인정됨.

- 그리고, 축산물부에 유전자 판별 검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수의 연구사 2명을 충원하는 것과,

식·의약품 검사 인력으로 보건연구사 1명을 증원하려는 사항,

전염병에 대한 예방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연구사 1명 증원하는 사항 등 4명은 인력 충원을 하는 것이므로,

업무조정을 통하여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꾀하여야 할 것임.

다. 단순관리기능(청소·경비 등)의 외주화를 통한 인력감축 사항(안 제2조)

- 시설위탁, 단순용역(청소·경비, 시설관리) 등 외주화를 통한 15개부서 (기관) 194명(기능직 193명과 일반직 1명)의 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작고 효율적인 조직구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됨.

다만, 민간위탁이나 외주화 등으로 인한 여유정원은 경제활성화, 복지서비스 등에 재배치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겠음.

[표 3] 단순관리기능의 외주화를 통한 인력감축 내역

구 분	기관(부서)	분 야	감축인력	감축직종·직렬		
	총 계		194명	일반직 1명	기능직 193명	
시설위탁	민방위담당관	민방위교육장	8		전기 3, 기계 2, 위생 3	
	체육시설사업소	초창운동장	10	행정9급 1	전기 1, 기계 1, 건축 2, 방호 4, 통신 1	
	물재생센터	중량물재생센터	중량물재생센터	11		전기 2, 기계 6, 위생 1, 조무 2
		난지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22		전기 7, 기계 13, 운전 1, 방호 1
단순용역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동물사육	3		사육 3	
	녹지사업소	청소,설비관리	12		전기 2, 기계 3, 위생 3, 조무 2, 사육 1, 방호 1	
	보건환경연구원	청소,설비관리,통신	14		전기 3, 기계 5, 위생 5, 통신 1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본부	경비,설비관리	8		전기 1, 기계 3, 방호 4
		상수도연구원	경비,설비관리,통신	4		전기 1, 기계 2, 방호 1
		수도사업소	경비,설비관리	19		전기 7, 기계 6, 방호 6
		한강사업본부	경비,청소,설비관리,통신	9		전기 2, 기계 1, 방호 4, 통신 2
	시립병원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경비,설비관리	8		전기 1, 기계 4, 방호 3
			경비,설비관리	13		전기 3, 기계 3, 방호 7
			경비	4		방호 4
		도로교통사업소	청소,설비관리	28		전기 14, 기계 13, 위생 1
		시립대	경비,청소	16		위생 12, 방호 4
	아동복지센터	경비,청소,설비관리	5		전기 1, 기계 1, 위생 1, 방호 2	

라. 기능쇠퇴 정원 감축 사항(안 제2조)

- 기능쇠퇴 정원은 교환, 조무, 사무보조 등 기능쇠퇴분야 82명(기능 8급 71명, 기능9급 11명)과 외주화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된 영화제작감독 및 기사 2명(별정직 2명)으로, 총 84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의 폐지 또는 축소된데 기인한 것임.

[표4]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 폐지·축소분야 등 정원 감축 내용

구분	기능유형별 특성	검토결과	감축정원
총 계			△82명
교 환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독립된 기능 상실	장기적 폐지	△1명
사 무 보 조	정보화 진전에 따른 기능쇠퇴로 직렬존치 필요성 감소	필기, 전산 : 장기적 폐지 워드 : 감축	△26명
위 생	단순기능 업무의 외주화 추진에 따른 직렬존치 필요성 감소	감축 및 아웃소싱	△7명
조 무	기능쇠퇴로 직렬존치 필요성 감소	장기적 폐지	△17명
전기·기계·건축	기술발달 등에 따른 전문성 약화	감축	△18명 (전기7,기계10,건축1)
화공·농림·사육	전문성 약화로 인한 동일분야 일반직 요구	감축	△3명 (화공,농림,사육)
방 호 · 운 전	전문성 높은 업무의 증대로 기능인력 수요 감소	감축	△10명 (방호5, 운전5)

기관	인원	세부내역 및 감축사유
홍보담당관	2명	• 5급 상당 1명(영상물제작 감독요원), 6급 상당 1명(영화기사 요원) - 시정 홍보관련 영상물 등의 외부민간 제작으로 정원 감축

마.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 사항(안 별표2)

- 정원조정 및 감축에 따른 기능직 직급 비율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능직의 상위직급(6·7급)은 기준비율을 확대하고 하위직급(8·9·10급)은 축소하여 전체적인 기능직 직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최근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이 다소 높아지고는 있으나, 상위직급으로 승진의 어려움, 직급분포비율의 편차로 인한 승진 적체, 그리고 기능직 정원의 대폭적인 감축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직급비율을 보다 상향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표 5]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안

구 분	6급	7급	8급	9급·10급
개정 전	(11)% 이내	(18)% 이내	(66)% 이내	(5)% 이상
개정 후	(13)% 이내	(21)% 이내	(62)% 이내	(4)% 이상

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임.

4. 결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97
----------	-----

제출년월일 : 2009년 6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경비 등 단순관리기능의 외주화로 인한 정원 194명과 기능쇠퇴 분야의 정원 84명을 포함한 278명을 감축하는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의 석면조사·연구 인력보강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1명을 증원하여 총 267명을 감축하고, 정원 조정 및 감축에 따른 기능직 직급비율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능직 정원채정 기준비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09. 5. 8. ~ 5. 27.)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150명”을 “15,88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829명”을 “9,562명”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10급
비 율	13% 이내	22% 이내	62% 이내	3% 이상

별표 3 총계란 중 계 “16,150”을 “15,883”으로 하고, 일반직 계란 중 계 “6,528”을 “6,530”으로, 4급란 중 계 “183”을 “186”으로, 본청 “103”을 “106”으로, 5급 이하 소계란 중 계 “6,285”를 “6,284”로 하며, 별정직 계란 중 계 “119”를 “117”로, 5급상당 이하 소계란 중 계 “118”을 “116”으로, 연구직 계란 중 계 “287”을 “295”로, 연구관란 중 계 “44”를 “45”로, 직속기관 “32”를 “33”으로, 연구사란 중 계 “243”을 “250”으로 하며, 기능직 계란 중 계 “3,115”를 “2,84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별 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2. 기능직공무원					【별 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10급	구분	6급	7급	8급	9급·10급		
비율	11%이내	18%이내	66%이내	5%이상	비율	13%이내	22%이내	62%이내	3%이상		
【별 표 3】 서울특별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별 표 3】 서울특별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총계	16,150					총계	15,883				
정무직 계 ~ 부시장	1명	라)				정무직 계 ~ 부시장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6,528					일반직 계	6,530				
1급 ~ 3·4급	1명	라)				1급 ~ 3·4급	현행과 같음				
4급	183	103	4급	186	106
4·5급	1명	라)				4·5급	현행과 같음				
5급이하 소계	6,285					5급이하 소계	6,284				
별정직 계	119					별정직 계	117				
4급 상당	1명	라)				4급 상당	현행과 같음				
5급상당 이하 소계	118					5급상당 이하 소계	116				
연구직 계	287					연구직 계	295				
연구관	44	32	연구관	45	33
연구사	243					연구사	250				
지도직 계	1명	라)				지도직 계	현행과 같음				
소방공무원 계	1명	라)				소방공무원 계	현행과 같음				
교육공무원 계	1명	라)				교육공무원 계	현행과 같음				
기능직 계	3,115					기능직 계	2,840				